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759호 2020. 7. 15.(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제2020-85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제2020-941호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3차) ..... 4  
 제2020-94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제2020-950호 「거창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1  
 제2020-955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 27  
 제2020-957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186호선, 중류3-1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9

회 램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962-130 등 12건
- 폐지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하월포길 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34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962-130	20091228	20200715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612-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3-68	20090401	20200715	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17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2길 132-96	20090401	20200715	거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29	20090401	20200715	마을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14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2길 196	20091228	20200715	술숲이 울창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739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수유길 123-38	20090401	20200715	마을 뒷산너머 개발골 골짜기 물을 끌어 넘겨서 농사를 지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993-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기1길 593-42	20090401	20200715	마을을 새로 옮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27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온천길 108-11	20090401	20200715	온천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537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화길 207-8	20091228	20200715	조선 선조 때 하빈인 월담 이정기가 그의 호에 "월"을 따고, 빛날 "화"자를 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7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하월포길 7	20090401	20200715	마을은 초생달 같고, 마을앞 황강물에 접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272-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188-8	20090401	20200715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1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5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원남산3길 47-50	20180807	20200715	남산마을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부여
1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7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하월포길 7	20090401	20200715	마을은 초생달 같고, 마을앞 황강물에 접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폐지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3차)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상림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거창군수

## □ 매입대상지 선정 기준

- ①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창읍 중앙·상림·대동리 등 2층 이하 저층 주택 및 나대지
- ②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한지 30년 (사용승인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④ 대지면적이 60㎡ 이상 500㎡ 미만이어야 한다.
- ⑤ 대지경계 등 부동산 물권권리에 하자가 있는 필지는 제외한다.
- ⑥ 기타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 매입필지 가점 적용 기준

- ① 나대지나 폐가는 가점 적용한다(단, 건축 경과년도와 무관함)
- ② 면적(인접필지와 병행 신청할 경우 합필면적)이 크거나 공지 인접필지는 가점 적용하며, 기타 지역적인 균형배치 및 인근의 공영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잔존가치가 적은 건축물 등)에 따라 가점 적용한다.
- ④ 기타 현장조건(경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한다.

## □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계약 방법

-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계약한다.
- 매입필지 선정 시 매입계획 필지보다 약30%를 추가 선정하여 예비 매입필지로 지정 후 매매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점수 순으로 이를 대체하여 계약한다.

## □ 기타사항

- 매매대상은 소재지상의 모든 물권을 포함한다.
-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 등기상 권리하자가 없어야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명도(거주자 퇴거 포함) 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로 문의(전화 940-338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20. 7. 9. ~ 2020. 7. 23.(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3층)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직접 신분증 지참 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
- 건물(나대지)사진(별지2)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이력 포함)

【별지 1】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 일자		③ 건물 주 거주여부	(거주, 비거주)
④ 물건소재지				⑤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⑥ 토지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 도로폭	m		⑧ 구조	철근콘크리트 ( ) 벽돌 ( ) 시멘트블럭 ( ) 기타:	
⑨ 대지면적	m <sup>2</sup>		⑩ 건물연면적	m <sup>2</sup> (지상 층/지하 층)	
⑪ 건물사용 승인일	년 월 일	⑫ 임대가구수	가구		
*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건물(나대지)사진(별지2에 전경.근경 부착)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지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거창군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본 부지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인)			
신청인 (대리인 신청시)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소유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수 귀하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신청 위임장

- 물건 소재지 :
- 대 지 면 적 :                    m<sup>2</sup>
- 주 택 유 형 :
- 건축 연면적 :                    m<sup>2</sup>(지상    층/지하    층)
- 소유자 성명 :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단독주택지(나대지)의 매입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0.        .

붙 임 : 토지(건물) 소유자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수임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2】

# 건물(나대지) 사진

전 경 (주변 건물보이게)

근 경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위촉위원을 추가하여 심사 기능을 내실화

### 3.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신설(안 제13조)
  - 1) 설치근거
  - 2) 위원회 구성 : 당연직 6명, 위촉직 1명

나. 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신설(안 제14조)

- 1) 위원회 심사대상
- 2) 심사제외 사항
-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

다. 조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킴(안 18조의2)

- 1)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이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므로 그 조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 제목을 변경
- 라. 조례로 위임된 연가보상비 지급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 1)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제도를 운영함이 바람직함.
- 3)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20-0122

4. 예고기간 : 2020. 7. 9.(목) ~ 7. 28.(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9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sykim6919@korea.kr](mailto:sykim6919@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 ☎(055)940-3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거창군 공무출장 심사위원회를(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제외)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조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둔다.</p> <p>②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1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들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li> <li>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li> <li>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li> <li>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li> <li>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p> <p>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2020. 3. 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 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 1. 29.]

##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314

### 나. 조문의 제목 표시

자치법규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법규내용을 검색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표현

## □ 법제처 자문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복무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서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에서의 별도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바로 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 규칙의 형식으로 심사위원회 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심사위원회에 관한 대략적인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조례에서 직접 규칙으로 위임 근거를 두게 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 「거창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군수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에 따라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2조)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을 정함(안 제3조)

- 1) 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거창군 소속 공무원
- 2) 정원 : 최소 1명 이상
- 3) 필수보직기간 : 3년 이상

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시행일을 법령 시행일과 같게 함(안 부칙)

#### 4. 제정조례안 : 붙임

#### 5. 입법예고 기간 : 2020. 7. 13. ~ 2020. 8. 3. / 21일간

####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전 화 : 055-940-3780
- 팩 스 : 055-940-373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 940-3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거창군 소속 공무원
2. 정원은 최소 1명 이상. 다만,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임용할 수 있다.
3. 필수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

**제4조(수당)** 거창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시행일 : 2020. 10. 1.] 제22조

◎ 거창군 공고 제2020-955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15.

거 창 군 수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지역	소 계	4,873,912	-	4,873,912	0.6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44,368	-	3,144,368	0.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465	-	173,465	0.02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
상업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소 계	1,271,445	-	1,271,445	0.1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243,003	-	1,243,003	0.15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0	-
녹지지역	소 계	25,413,367	-	25,413,367	3.16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6,636	-	16,046,636	2.00	-
관리지역	소 계	262,118,324	증) 9,020	262,127,344	32.60	-
	보전관리지역	171,787,051	-	171,787,051	21.36	-
	생산관리지역	8,261,516	-	8,261,516	1.03	-
	계획관리지역	82,069,757	증) 9,020	82,078,777	10.21	-
농림지역		469,415,799	감) 9,020	469,406,779	58.37	-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
미지정		-	-	-	-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9,0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읍 양평리 일원에 거창군민의 체육 활동 및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을 결정함에 따라, 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li> </ul>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다목적 체육관	실내 체육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2번지 일원	-	9,020	9,020		

나.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다목적 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시설 신설</li> <li>- 면적 : 9,0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민에게 질 높은 체육·문화시설 제공과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를 유치 및 체육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신설)</li> </ul>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4.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0 - 957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186호선, 중로3-1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6호선, 중로3-1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4.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86호선)	가조	수월	소로	2	186	246.0	8.0	2,800	가조면 마상리 483번지~ 가조면 수월리 512-2번지 가조면 마상리 2-18번지~ 가조면 마상리 2-2번지	경고115호 (79.5.24.)	2020.7~ 2021.12
	도시계획도로 (중로3-11호선)	가조	마상	소로	3	11	63.0	12.0				

2. 사업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186호선, 중로 3-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6,825	2,800					
1	가조면 마상리	2-18	도	2,779	13		거창군			
2	“	2-3	과	22	1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67, 215동 501호	이길수			
3	“	2-5	과	245	21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15	전옥수			
4	“	321-22	학	107	89		경상남도(교육감)			
5	“	483	학	21,317	90		경상남도(교육감)			
6	“	2-10	과	257	25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렬로7길 29, 106동706호	한희자			
7	“	2-2	과	262	111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67, 215동 501호	이길수			
8	“	2-9	과	597	14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렬로7길 29, 106동706호	한희자			
9	가조면 수월리	2-27	과	378	3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2013동 2002호	김태성			
10	“	495-12	과	17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1114동 1101호	강은석			
11	“	495	과	874	172	부산 사하구 신평동 600-10	김필규			
12	“	495-5	과	1,835	169		거창군			
13	“	497-1	전	231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길 45, 601호	김옥이 외 3인			
14	“	499-1	전	4,945	494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길 45, 601호	김옥이 외 3인			
15	“	503-2	도	1,255	39		국(농수산부)			
16	“	866	구	3,317	105		국(농수산부)			
17	“	516-1	답	2,568	17	경남 김해시 장유면 덕정로 108, 105동 603호	진진숙			
18	“	520	답	1,964	29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127번길 55, 103동 307호	이춘옥			
19	“	520-1	도	106	30		국(농수산부)			
20	“	515	답	3,521	82	대구 동구 동호동 362 상록아이투빌 201-1405	박봉환			
21	“	508-3	구	150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2	“	512-3	구	45	3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3	“	512-2	도	33	8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5), FAX(055-940-3579), E-mail : hds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